##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22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 백승아·오세희·정을호

조인철 • 한창민 • 황정아

이훈기 • 조계원 • 박범계

김기표 • 이수진 • 강준현

김준혁 · 송재봉 · 박선원

허성무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, 경계선 지능, 경제적 어려움,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, 학교폭력,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 주하고 있음.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,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. 그러나 부처별, 기관별, 사업별 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, 지원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,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. 특 히,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, 실질적인 도움 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. 또한,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, 연계,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,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지원에 한계가 존재함.

이에 부처별, 기관별,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,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 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##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·복지·건강·진로·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학생맞춤통합지원"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, 경제적 어려움, 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, 학교폭력, 경계선지능,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  - 가.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·복지·건강 •진로·상담 등의 지원
    - 나.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  - 2. "지원대상학생"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.

- 3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.
- 4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
- 5. "교육행정기관"이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 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  - 2.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, 지원체계 구축 및 전 문인력 양성
  - 3.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·도지사(교육감을 포함한다)와의 연계·협력 체계 구축
  - 4.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
  - 5.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·시행과 평가 및 조사·연구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.
- 제5조(시·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) ① 시·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학생맞춤 통합지원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교육감은 시·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·복지·건강·진로·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시 ·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
  - 2.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
  - 3.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
  - 4. 제8조에 따른 시·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 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
  - 5.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

의에 부치는 사항

- ④ 시·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시·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) ① 교육감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 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  - ②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학습·복지·건강·진로·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
  - 2.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
  - 3.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
  - 4.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④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교원, 학생 및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)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·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(이하 "중앙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
  - 2.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·연구 및 정책 분석·평가
  - 3.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
  - 4.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·도지사(교육감을 포함한다)와의 연계·협력 체계 구축 지원
  - 5.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ㆍ보급
  - 6. 제8조제1항에 따른 시·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
  - 7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

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시·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에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(이하 "시·도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한다. 다만, 시·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·조정
  - 2.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원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

- •관리 및 지원센터간의 연계
- 3.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
- 4.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
- 5.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
- 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
-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(이하 "지역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수 있다.
- 1.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원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 • 관리 및 지원센터간의 연계
- 2.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
- 3.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 원
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
- ③ 시·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·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시·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·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시·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9조(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 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, 시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지원대상학생의 선정)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학생,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·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.
  -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.
  -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 기준·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, 선정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  - ⑥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 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,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
  - ①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⑧ 그 밖에 지원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, 지원대상선정 과정에서 이

- 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,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 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 ·관리할 수 있다.
  - 1.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
  - 2.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
  -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
  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
  - 5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
  - 6.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
  - 7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
  - 8. 「진로교육법」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
  - 9.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·안전 관리 관련 지원
  - 10. 복지서비스, 의료지원 등 연계
  - 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- ②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·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1.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
- 2.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
- 3.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
- 4.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
- ③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워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, 경제적 어려움, 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,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학습·심리·진로·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(이하 이 조에서 "위기학생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있다. 다만,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학습·심리·진로·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⑦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⑧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·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할 수 있다.
- 제12조(학생별 지원·관리) ①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.
  - 1.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
  - 2.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·심리적·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·제공

- 3.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 •관리
- ② 교육감은 시·도지원센터,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을 지원대 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·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4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,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3조(업무의 지도·감독 등) 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라 지도·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14조(연수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·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,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)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

지원의 통합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 를 거쳐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아동복지법」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, 「청소 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의사,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(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) ① 교육감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(이하 "학교 밖 청소년"이라 한다)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
  - 2.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, 재입학,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
  - 3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
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7조(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,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·활용하여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
  - 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  - 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

- 4.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
- 5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 보시스템
-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1. 제2조제1호의 각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
- 2.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,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
- 3.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
- 4.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
- 5.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
- 6.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 연계 가공한 정보
- 7.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
- 8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

- 9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10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정보
-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, 시도교육청, 교육행정기관, 시·도지원센터, 지역지원센터,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보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- ⑦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학교, 시도교육청, 교육행정기관, 시· 도지원센터, 지역지원센터,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

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 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.

- ⑧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, 보유기간, 개인정보 취급 승인의 절차,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정보의 요청 및 활용)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청소년(이하 이 조에서 "지원대상학생등"이라 한다)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정보,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보,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아동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다른 시·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(국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 내의 교육장 및 학교의

- 장이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· 가공할 수 있다.
- ④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·연계·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수 있다.
- ⑤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 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·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개인정보 처리정지 등)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위기학생의 정보
  - 2.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- 제2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, 교육장,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.